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53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권향엽 · 김 윤 · 홍기원
박지원 · 윤건영 · 김남근
박희승 · 허성무 · 박지혜
진성준 · 문금주 · 곽상언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일정 기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의 다양성과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 평화롭게 진행된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1헌바168등, 2026. 2.26.).

이에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

행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항 및 제26조제1항 신설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2.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주최한 자
3.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①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벌칙) ① (생 략)</p> <p>② <u>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③ · ④ (생 략)</p> <p>제26조(과태료) <u><신 설></u></p>	<p>제2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p> <p>1. <u>제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u></p> <p>2. <u>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주최한 자</u></p> <p>3. <u>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6조(과태료) ① <u>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위반</u></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p>	<p><u>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옥외 집회를 주최한 자는 제외한다.</u></p> <p>② (현행 제1항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 ----- ----- -----.</p>
--	--